

세종시 2-4생활권 **트리쉐이드 리젠시**

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내문

- ※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의무화(2017년 9월 26일 시행,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)에 따라 계약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당사에서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대량으로 신고하고자 하오니, 계약 시(사전접수 가능. 단, 추가서류 원비자에 한함) 계약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, 또는 당사 홈페이지(www.treeshade-r.com) 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- ※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허위작성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**

-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구분	항목	상세항목	내용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	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
	부동산매도액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종전 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/재개발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		이에 준하는 자금	부동산 등의 매각(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하는 자금
	보증금 등 승계	현 임차인 전세(보증금)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매도인 채무 상환 등	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 등 (담보대출 승계는 제외, 차입금 대출액에 기재)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
		펀드/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이에 준하는 자금	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	
차입금 등	금융기관 대출액	금융기관 대출 등	부동산 등 담보대출,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
	사채	금융기관이 아닌 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	기타	금융기관 대출액/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	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 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	입주 외 기타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